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56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구성·주요내용	4
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현행 법규	7
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10
라. 관계기관 의견	13
2.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안 제1조)	15
나. 정의(안 제2조)	17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18
라. 주민의 책무(안 제4조)	21
마. 범죄예방정책협의체(안 제5조)	22
바.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안 제6조)	24
사. 범죄예방진단(안 제7조)	26

아.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안 제8조)	29
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조치(안 제9조 · 제10조)	32
차.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안 제11조)	35
카. 범죄 예보·경보(안 제12조)	37
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안 제13조·제14조)	39
파.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안 제15조·제16조)	42
하.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안 제17조)	43
가. 권한의 위임(안 제18조)	45
나. 과태료(안 제19조)	46

I.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각종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는 개인의 권익 침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처벌 및 사법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2) 전국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를 두고, 지역별 범죄예방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각각 둠(안 제5조 및 제6조).
- 3)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배치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6)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7) 경찰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8)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9)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구성·주요내용

제정안은 현재 치안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범죄예방 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제정안은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찰청장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두고(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예방진단(안 제7조), 범죄예방강화구역의 지정(안 제9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안 제11조), 범죄 예보·경보(안 제12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안 제13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안 제15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안 제8조),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조 항	내 용	비고(주체·소속)
제1조	(목적) 지역별 범죄예방기반 조성에서 치안활동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 강화 구역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주민의 책무	
제5조	범죄예방정책협의체	경찰청장 소속
제6조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	범죄예방진단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8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11조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경찰청장
제12조	범죄 예보·경보	경찰청장
제13조 제14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
제15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
제16조 제17조	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정안 제8조에 규정된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¹⁾: CPTED 셉테드)은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범죄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학제적인 이론이자 실천전략²⁾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용어로도 일컬어지고 있음. 1세대 CPTED는 행정기관, 전문가 주도로 범죄취약요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에 초점을 두었고, 2세대 범죄예방디자인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더해 이웃교류증진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을 강조함.³⁾

1) 동 개념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의 범죄학 교수인 C. Ray Jeffery가 1971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저서를 출판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함.

(출처: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CPTED의 이해>범죄예방디자인 개념)

2) 사단법인 한국셉테트학회 홈페이지>CPTED 소개>CPTED 개념 및 실천원리

동 내용은 미국의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NCPI)가 정의한 내용임(출처: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CPTED의 이해>범죄예방디자인 개념))

3)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CPTED의 이해>범죄예방디자인 개념

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현행 법규

범죄의 예방 업무는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찰의 임무에 포함됨.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4)에서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음.⁴⁾

제정안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제정안 제6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와 유사한 취지의 조항으로 대통령령인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1조에 따른 자치경찰정책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음.⁵⁾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 8. (생략)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 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 라. (생략)

② · ③ (생략)

- 5)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정안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시책,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과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예규인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2021. 11. 8. 예규 제30호)6), 「대구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2021. 10. 15. 예규 제4호) 등에서 범죄예방진단의 대상·방법·고려사항·결과의 활용,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훈령인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7)에 규정되었으나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 이후인 2021. 4. 30.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회) ①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6)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 규칙」(2021. 11. 8. 제정, 예규 제30호)

제1조(목적)	제7조(범죄예방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용어의 정의)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제3조(범죄예방진단의 대상)	제9조(유관기관 협업)
제4조(범죄예방진단의 방법)	제10조(범죄예방 전문요원 운영)
제5조(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	제11조(통계 관리)
제6조(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	제12조(유효기간)

7) (구)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7조(범죄예방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정의)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제3조(범죄예방진단의 대상)	제9조(유관기관 협업)
제4조(범죄예방진단의 방법)	제10조(범죄예방 전문요원 운영)
제5조(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	제11조(통계 관리)
제6조(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	제12조(유효기간)

동 규칙은 폐지되었음.

그리고, 제정안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2005년 9월 판교신도시에 CPTED 시범 적용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을 마련함.⁸⁾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⁹⁾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¹⁰⁾ 2015년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을 마련함.¹¹⁾

8) 연합뉴스 2005년 7월 27일 기사, “판교신도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9)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임.

10)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1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목적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는 것임.

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현행 시도경찰청예규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경찰청장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정보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청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7조·제9조는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치들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전에는 경찰청훈령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청훈령이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예규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치들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²⁾

그리고, 제정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건축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 제13조에서는 경찰청장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건축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제도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 외에 관계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5조와 제6조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체로 현행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법무부장관

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소속)13), 현행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14)에 따른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5)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 등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되는 협의체와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2. 경찰청의 차장
- ② (생략)

14)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15) (예시)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라. 관계기관 의견

1) 경찰청

경찰청은 예방순찰, 방범진단·점검, 협의체 구성, 환경개선 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도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범죄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시행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협력단체, 주민 등과의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등 13개)¹⁶⁾

강원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안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현재 구성된 자치경찰정책협의체를 통해 전국의 범죄예방 정책에 대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16)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신설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⁷⁾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 건축법 심의 및 도시디자인 설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설계·심의 관련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¹⁸⁾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 이원화¹⁹⁾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인 범죄 예방을 국가경찰이 전담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역행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과 권한이 불명확해져 치안행정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²⁰⁾

17) 경기도

18)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19)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4면 2025. 8.

④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 주요내용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은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20)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제정안이 규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조항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지역별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주체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에서 해당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자구 측면에서 제정안 제1조의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부분을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진단”이란 지역 내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지역 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범죄예방,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조는 범죄예방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 제2조제2호의 범죄예방진단, 제3호의 범죄예방디자인, 제4호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개념은 현행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예규) 등에 정의된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동일한 내용임.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업무를 추진할 때 상호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업무의 효과가 향상되고,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 및 범죄 예방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3조제1항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²²⁾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 제3조제1항을 규정할 필요가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책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예방업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범죄 예방업무 중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임.²³⁾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정안 제3조제4항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킬지 여부는 지역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²⁴⁾ 등 유사입법례 내용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3조제4항의 문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3조제5항은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제정안 제8조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견²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참고로,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4)는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 외의 경찰의 임무(범죄의 예방 포함)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예방 중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임.

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5) 광주광역시와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고, 대구·울산광역시는 자치경찰이 건축법 심의 및 도시디자인 설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설계·심의 관련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라. 주민의 책무(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조제2항은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²⁶⁾

2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범죄예방정책협의체(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범죄예방정책협의체) ①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에 관해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구성 및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은 범죄예방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5조와 유사한 목적의 협의체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과 경찰청의 차장을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3년 3월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함.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는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를 두고 있도록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제정안 제5조에 따라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립이 중복적인 협의체 설립으로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바.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지역 범죄예방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할 경찰관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의 결정이 지역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할 경찰관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원활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범죄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 제5조에 따라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설립이 중복적인 협의체 설립으로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기도는 범죄예방은 자치경찰 사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경찰청장이 전국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이나 지방자치단체별 범죄예방 사업의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정책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협의체 신설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사. 범죄예방진단(안 제7조)

제 정 안

- 제7조(범죄예방진단)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예방진단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각 시도경찰청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51,920건이 실시됨.

제정안 제7조를 통해 범죄예방진단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단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시도경찰청 예규(「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등)에 범죄예방진단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²⁷⁾

다만, 범죄예방진단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에는 경찰청훈령²⁸⁾에

27)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제3조(범죄예방진단의 대상)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 등이 범죄, 사고,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
2.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건축물·시설·공간
3. 그 밖에 시경찰청장등이 범죄·사고 발생 및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범죄예방진단의 방법) ① 경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진단의 취지와 이유, 진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하거나 지역경찰포털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카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범죄예방진단 카드에는 항목별로 위험 정도를 면밀히 진단하여 진단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 (생략)

제6조(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 (생략)

28) (구)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3조(범죄예방진단의 대상) 범죄예방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청훈령이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예규(「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등)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치들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⁹⁾

1.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시설물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이 범죄, 사고,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경찰서장이 범죄·사고 발생 및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범죄예방진단의 방법) ① 경찰관이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시설물이나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진단의 취지와 이유, 진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하거나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카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범죄예방진단 카드에는 항목별로 위험 정도를 면밀히 진단하여 진단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 ① 경찰관이 제3조 각 호의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구조와 방법시설 등 물리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112신고 건수 및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등 범죄특성을 파악하고, 노약자·여성·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과 외국인·유동인구 현황 등 사회적 환경 요인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예방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관련 빅데이터 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진단을 할 때에는 최근의 범죄경향, 경찰의 범죄예방노력, 범죄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④ 경찰관은 범죄예방진단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 ① 경찰서장은 진단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교부할 경우에는 주민·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하다고 분류된 장소나 지역에 대해 재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아.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예방디자인은 범죄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예방 전략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구체적인 예로는 구청의 환경개선 사업, 안심거리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건물 도색 등이 있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며 연간 천여건 실시됨.

<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 현황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실시 현황	953건	1,312건	1,477건	970건

(자료: 경찰청)

제정안 제8조를 통해 건축물 등을 심의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법」 등의 건축허가 요건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한 건물 등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³⁰⁾도 있고, 의무적으로

30)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례³¹⁾도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제정안 제8조를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자치경찰이 건축법 심의 및 도시디자인 설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설계·심의 관련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임.

-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조치(안 제9조·제10조)

제 정 안
제9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해제한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정된 범죄예방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8조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 집중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71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현행 시도경찰청 예규(「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등)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³²⁾

다만, 앞서 살펴본 범죄예방진단과 유사하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경우에도 자치경찰제도 시행전에는 경찰청훈령³³⁾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32)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① 시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시설 등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과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방범시설 설치,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업 등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3) (구)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시설·환경 개선과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업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청훈령이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예규 (「대전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진단규칙」 등)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치들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⁴⁾

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차.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범죄예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이하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범죄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정보를 활용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범죄예방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경찰청장이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예방정보에는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치안데이터(범죄위험도, 방범시설, 범죄취약지, 탄력순찰지, 범죄예방진단현황 등)가 있고, 범죄예방정보 관련 시스템에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음.

제정안 제11조를 통해 정보 관리 및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카. 범죄 예보·경보(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범죄 예보·경보) ①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예보·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정안 제12조는 경찰청장이 살인, 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이를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입법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제1호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경찰청장이 범죄에 예보 또는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범죄의 피해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치경찰제가 2021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 제12조에 따라 경보 또는 예보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안 제13조·제14조)

제 정 안
제13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닌 것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및 청문)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찰청장이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에 대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운영중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제도에는 경찰서가 2016년부터 실시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와 한국셉테드학회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³⁵⁾이 있음.

경찰서가 실시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민간의 자율적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6년 최초로 주차장 인증·시행했고, 2018년 원룸 대상으로 확대함. 현재 주차장 904개소, 원룸 445개소 등 총 1,349개소를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운영중임. 동 인증의 기준은 경찰청이 마련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됨.

< 연도별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현황 >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6월	취소*
주차장	904	123	257	73	181	139	122	111	145	78	27	352
원룸	445	-	-	256	207	96	78	22	101	11	10	336
총계	1,349	123	257	329	388	235	200	133	246	89	37	688

* 취소는 폐업 또는 취소요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의미

자료: 경찰청

한국셉테드학회가 실시 중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이 있으며, 2010년 9월 이후 디자인 인증 130건, 시설 인증 77건 등 총 207건의 인증을 함.³⁶⁾

35)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홈페이지 <https://kca.cpted.or.kr/kr/>

36)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홈페이지>인증원 소개>인증실적 목록

제정안 제13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인증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우수한 범죄예방디자인이 나와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3조에서는 경찰청장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건축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경찰서 외에도 한국셰테드학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제도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 외에 관계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파.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안 제15조·제16조)

제 정 안
제15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는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정안 제16조·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통해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제도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 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지역별 범죄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 주민 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행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 제17조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행 및 범죄 예방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7조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가목4)에서는 범죄예방 중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을 자치경찰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³⁷⁾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지원과 중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와 제정안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행 및 사업 등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권한의 위임(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정안 제18조는 제정안에 규정된 경찰청장의 업무인 범죄예방정보 자료의 관리, 범죄 예보·경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8조를 통해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경찰청에 따르면, 제정안 제18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등의 업무를 시·경찰청장 등에 위임할 계획임.

나. 과태료(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제19조는 범죄예방디자인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제7호는 지진 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³⁸⁾

3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의 처
02) 6788-5345

-
1. ~ 6. (생 략)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 9. (생 략)